

공직기강(행동강령) 점검표

부점명 :

구 분	주요 점검항목	특이사항		비고
		여	부	
복무기강	- 무단 외출 및 결근 등 근무시간 미준수			
	-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퇴근			
	- 업무시간내 음주·도박 등 근무 부적정			
	- 비상연락망 미구축 등 연락체계 부적정			
보안관리	- CCTV, 감지기 등 보안장비 미작동			
	- 문서유출 등 중요 문서·자료관리 소홀			
	- 개인정보 서류 이면지 활용, 공용장소 방치 여부			
	- 출입문 시건 상태 부적정			
업무처리 지연등	- 신청서류(보증,보증채무이행) 전산 미등록			
	- 신청서류 안내 적정여부			
	- 민원발생에 대한 미조치			
시설물 안전점검	- 불필요한 전열기구 소등, 전원차단 여부			
	- 소화기 비치여부(불량 등 확인)			
청탁금지법 준수	- 보증업체에 금품 및 향응 수수·요구			
	- 부정청탁에 의한 보증심사 처리			
	- 추석명절기간 직무관계자로부터 골프, 숙박편의 제공 요청 및 수수행위			

2018.09.00

점검자 : 0 0 0 (인)

비위유형별 징계 및 「청탁금지법」 위반 사례

아래 사례는 서울특별시 징계사례(최근 5년), 인사혁신처 '징계사례'(2015), 국민권익위원회 '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 사례'(2017)에서 일부 발췌해 구성한 내용으로, 현 징계 및 소청 관련 법령에 의할 경우 징계수위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.

1 복무위반

- (근무시간 중 유희행위) 공무원 A와 B는 근무시간 중 당구장 출입 → 경징계
- (허위출장 후 음주) 공무원 A,B,C,D,E는 허위출장 후 음주 → 경징계
- (허위출장 후 무단장 출입) 공무원 A는 허위출장 후 관외지역 무단장 출입 → 경징계
- (상습 조기퇴근 및 갑질) 투자·출연기관 직원 A는 현장에서 상습 조기퇴근 및 업무를 빙자한 업체차량 이용 → 경징계

2 금품 및 향응수수

- (연가지침 위반 및 직무관련자와 골프) 공무원 A는 오후 반일 연가 지침 위반 후 골프장에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그린핀 14만원 수수 → 경징계
- (명절 상품권 수수) 공무원 A는 관내 단체장으로부터 10만원권 명절 상품권 수수 → 경징계 및 「청탁금지법」 위반 법원 통보
- (병원비 명목 금품수수) 공무원 A는 병원비 명목으로 업체직원으로부터 50만원 수수 → 중징계 및 「청탁금지법」 위반 법원 통보
- (민원처리 명목으로부터 금품수수) 투자·출연기관 직원 A는 '○○사업' 관련 발생 민원 처리 명목으로 관련 업체직원으로부터 100만원 수수 → 중징계

3 「청탁금지법」 위반 사례(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)

- 공공 공연장의 공직자 2인이 해당 공연장에서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한 공연의 기획사 대표로부터 공연 전날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 수수 → **제공자 및 소속 법인 과태료 4배, 수수 공직자 2인에 각각 과태료 2배**
-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, 담당 수사관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 → **제공자에게 과태료 3배**
- 교육 투자 사업자가 학교 교원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해 300만원 상당 여행경비 제공 → **수사의뢰**
-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원 제공, 공사 감리자는 금품반환 → **수사의뢰**